

부산지방법원 2021. 11. 23 선고 2021가단302007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창열

피 고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10. 19.

판 결 선 고 2021. 11. 23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로부터 7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2019. 11. 7.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11. 7. 피고로부터 D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을 대금 294,000,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, 계약금 20,000,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, 중도금 204,000,000원의 대물변제로 거제시 E 대 264㎡ 및 그 지상 목조 함성지붕 단층 단독주택 33㎡와 시멘트블럭조 스레트지붕 단층 단독주택 19.8㎡ 및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하며, 잔금 70,000,000원은 2019. 12. 7.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(이하 ‘이 사건 분양계약’이라 한다)을 체결하고,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20,000,000원을 지급하였다.

나. 원고는 2020. 2. 26.경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중도금 204,000,000원의 대물변제를 마쳤다. 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잔금 70,000,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1. 7.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

피고는, 피고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, 피고의 채권자들이 신청한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이 이루어져 있으므로, 위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한 집행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행판결을 받아도 이행 또는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사유로 볼 수 있을 뿐, 그로써 피고의 이행의무 자체가 부존재하게 된다고 볼 사유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,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(이 사건은 위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의 채무자인 피고가 제3채무자인 위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처럼 위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의 집행 해제를 조건으로 인용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)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미진

[별지]

목 록

1동의 건물의 표시

부산광역시 연제구 . 주상복합 주건

층물 동

[도로명주소] 부산광역시 연제구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물번호 :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조

면 적 : 84.617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 지의 표시 : 1.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 304.2㎡

2. 부산광역시 연제구 대 189.2㎡

대지권의 종류 : 1, 2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493.4분의 17.4403

